무배당 스텝업 재테크 변액연금보험 약관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21

<< 주요내용 요약서 >> 22

<< 보험용어해설 >> 24

무배당 스텝업 재테크 변액연금보험 약관 27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7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27
제2조【청약의 철회】 27
제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27
제4조【용어의 정의】 28
제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31
제6조【계약의 무효】 31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32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33
제9조【계약의 소멸】 33
제10조【보험나이】 33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34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34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4
제13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34
제14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35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6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6
제1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37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37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37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7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38
제2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38
제22조【해지환급금】 40
제23조【배당금의 지급】 40
제24조【소멸시효】 40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40
제25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40
제26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41
제27조【펀드의 유형】 41
제28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41
제29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41
제30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2
제31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42
제32조【특별계정의 폐지】 42
제33조【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 42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43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 43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43
제3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44
제37조【사기에 의한 계약】 44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44
제38조【주소변경통지】 44
제39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45
제40조【대표자의 지정】 45
제4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45
제4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45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45
제44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46
제45조【계약내용의 교환】 46
제4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48
제47조【보험계약대출】 49

제7관 분쟁조정 등 49

제48조【분쟁의 조정】 49
제49조【관할 법원】 49
제50조【약관의 해석】 49
제5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9
제52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49
제5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50
제5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50
제55조【준거법】 50
제5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0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1) 51
(별표2) 보험금 지급기준표(2) 53
(별표3) 재 해 분 류 표 54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43조 제4항 관련) 55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저축성상품

-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변액보험

-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 체결, 유지비용(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통신판매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5.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용어해설 >>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변액보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 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

○ 특별계정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립운용)의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

○ 일반계정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립운용)의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 펀드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 자산

○ 특별계정적립금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으로 펀드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

○ 특별계정투입보험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해진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투자를 목적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에 투자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위험보험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월계약해당일마다 공제하는 비용.

○ **최저사망보험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약관 본문에 정의된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최저적립금**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일까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매 기본적립금 보증일 및 연금개시일에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

○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운용보수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운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
-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 수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 사무관리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무배당 스텝업 재테크 변액연금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은 가입시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이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연금개시나이 해당일부터 종신까지입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 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 연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기본보험료”라 합니다)

③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이외의 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이하 “추가보험료”라 합니다)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보험료 포함) 총액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또한 추가납입보험료는 1만원이상 만원단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제3항에서 정하는 “추가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로 연금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table>
<tr><td colspan="3">연금지급형태</td></tr>
<tr><td rowspan="3">종신연금형</td><td rowspan="2">보증기간부
(보증지급기간: 10년/20년)</td><td>정액형</td></tr>
<tr><td>체증형(5%/10%, 10년간 체증)</td></tr>
<tr><td colspan="2">보증금액부</td></tr>
</table>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계정의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 처리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3.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이 보험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운용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

입니다. 주요 특별계정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4. “펀드”라 함은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금】
계약자 적립금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의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다만, 특약보험료 제외하며, 이하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중도에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거나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의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 및 제4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7.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8.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9. “최저적립금”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일까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매 기본적립금 보증일 및 연금개시일에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 매 기본적립금 보증일의 최저적립금은 “가”목의 최저기본적립금을 말하며, 연금개시일의 최저적립금은 “가”목의 최저기본적립금과 “나”목의 최저추가납입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 최저기본적립금
- 최저기본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매 기본적립금 보증일 및 연금개시일에서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으로 “다”목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최저추가납입적립금
- 최저추가납입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연금개시일에서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으로, 연금개시일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기본적립금 보증일 및 연금개시일의 최저기본적립금 산출에 관한 사항

납입기간	기본적립금 보증일 및 연금개시일	최저기본적립금
5년납 및 7년납 5년납 및 7년납	납입기간 종료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90%
	보험계약일 이후 10년 경과 계약해당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2%
	보험계약일 이후 10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연금개시일까지 매 2년 경과 계약해당일	매 2년마다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5%p씩 증액한 금액
10년납	납입기간 종료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0%

납입기간	기본적립금 보증일 및 연금개시일	최저기본적립금
이상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금개시일까지 매 2년 경과 계약해당일	매 2년마다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5%p씩 증액한 금액

※ 기본적립금 보증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을 최저보증해주는 시점

※ 납입기간 종료일: 최종 기본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달 계약해당일

※ 매 기본적립금 보증일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으며, 연금개시일에 한해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가 최저보증됩니다.

※ 연금개시일이 최종 기본적립금 보증일로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경우 연금개시일의 최저기본적립금은 최종 기본적립금 보증일의 최저기본적립금과 같습니다.

※ 최저기본적립금 및 최저추가납입적립금 예시

(기준: 35세 가입, 70세 연금개시, 5년납)

기본적립금 보증일	최저 기본적립금	최저 추가납입적립금
5년 계약해당일 (납입기간 종료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90%	-
10년 계약해당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2%	-
12년 계약해당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7%	-
14년 계약해당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2%	-
…	…	-
32년 계약해당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57%	-
34년 계약해당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62%	-
연금개시일 (35년계약해당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62%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100%

㈜ 매 기본적립금 보증일에만 최저 기본적립금이 보증되며, 연금개시일 전에 추가납입적립금은 최저보증 되지 않음

10. "최저적립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최저적립금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1.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12. "월계약해당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한달 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

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연금지급형태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text{감액 직전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의 기본보험료}}{\text{감액 직전의 기본보험료}}$$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text{감액 직전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의 기본보험료}}{\text{감액 직전의 기본보험료}}$$

㈜ 감액 직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이전에 감액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상기 방법 또는 제4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형태를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table>
<tr><td colspan="3">연금지급형태</td><td>연금개시전 보험기간</td><td>연금개시후 보험기간</td></tr>
<tr><td rowspan="3">종신
연금형</td><td rowspan="2">보증기간부
(보증지급기간
: 10년/20년)</td><td>정액형</td><td rowspan="4">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td><td rowspan="2">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td></tr>
<tr><td>체증형
(5%/10%, 10년간 체증)</td></tr>
<tr><td colspan="2">보증금액부</td></tr>
<tr><td colspan="3">상속연금형</td><td rowspan="2">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10년, 15년, 20년</td></tr>
<tr><td colspan="3">확정연금형</td></tr>
</table>

⑥ 제1항 제1호에 의한 변경의 경우 추후에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⑦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제6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하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9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6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2.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해(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 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납입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중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3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제29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의 제1항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말합니다)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납입한 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 합니다)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② 기본보험료의 경우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이며,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

가. “납입기일 – 제 2 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납입기일”을 이체사유 발생일로 하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납입기일 – 제 1 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납입기일 + 제 1 영업일”을 이체사유 발생일로 하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후,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 + 제 1 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납입기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납입일 + 제 2 영업일”을 이체사유 발생일로 하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후 “납입일 + 제 2 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납입일 + 제2영업일”을 말하며,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를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을 적용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의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2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계약자의 기본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②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 청약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과 연체된 기본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제외,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예정이율 계산한 이자 포함)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④ 제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된 기본보험료가 완납된 경우 “연체된 기본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
2. 연체된 기본보험료 완납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승낙일

⑤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7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⑥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가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1)” 및 별표2 “보험금 지급기준표(2)”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을 지급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항 제1호,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에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이 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이 제4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 의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제4조(용어의 정의) 제9호에 의한 연금개시시점의 최저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그 최저적립금를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부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점 이후 보증지급기간(10년,20년,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연금종류의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점 이후 보증지급기간(10년,20년,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연금종류의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이 보험의 연금액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회사는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5: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공시기준이율(%) = 외부지표금리 × 0.5 + 운용자산이익률 × 0.5

㈜ 1)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수익률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수익률(%) = A_1 × 0.5 + A_2 × 0.5

- A_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_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Ai) = {Mi(−3)×1 + Mi(−2)×2 + Mi(−1)×3} / 6
  단, Mi(−3)은 직전 3개월, Mi(−2)은 직전 2개월, Mi(−1)은 직전 1개월 이율

2)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한다.

◦운용자산이익률(%) = B_1(운용자산수익률) − B_2(투자지출률)

- B_1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text{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B_2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text{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2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연0.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연1%일 경우),적립금은 공시이율(연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연1%)로 부리됩니다.

제22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 및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서면동의 철회권)) 및 제14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4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적립금 보증일에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의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기본적립금 보증일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해당시점의 제4조(용어의 정의) 제9호에 의한 “최저적립금”으로 최저보증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본적립금 보증일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3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4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5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① 이 계약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서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당월 위험보험료와 납입후 유지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적립금 보증비용 등) 및 중도인출금액(중도인출수수료 포함)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차감합니다.

제26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제27조【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알파플러스파생혼합형
  채권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이미 납입한 특별계정투입보험료의 95%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KOSPI 200 지수의 성과와 연계된 장외 Call Option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② 제1항 펀드의 유형을 이 보험의 변액보험운용설명서에서 정한 운용방침에 따라 구성합니다.

제28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29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①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 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전일종가(마감가격)기준)}}{\text{특별계정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자금이체시 적용하는 각 펀드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에 정해진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합니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제13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의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2.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3. 중도인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신청일 + 제2영업일”
4.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계약해당일”
5.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소멸 또는 해지일” (단,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신청일 + 제2영업일”)
6.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한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
7.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날”

제30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1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 변경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 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제32조【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 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그 당시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의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33조【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또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 모집인)에게 고혈압이 있다고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또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 모집인)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료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당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 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3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8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고, 동조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4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4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초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4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제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35조(계약전 알릴의

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 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임.

⑥ 제5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44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5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지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②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기간및이용기관

제4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만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년도】
당해년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기본보험료의 2,0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보험료에 의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보험료에 의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예1)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적립금≠해지환급금)
적립금 2,000만원, 해지환급금 1,800만원, 가입시 주계약 기본보험료 70만원
→ 해지환급금인 1,800만원의 50%는 900만원이나, 인출 후 적립금이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0배인 1,400만원 이상 남아 있어야 함으로 600만원까지 인출 가능
예2) 계약일로부터 7년 이후인 경우(적립금=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적립금) 2,000만원, 가입시 주계약 기본보험료 70만원
→ 해지환급금인 2,000만원의 50%는 1,000만원이나, 인출 후 적립금이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0배인 1,400만원 이상 남아 있어야 함으로 600만원까지 인출 가능

⑤ 제1항에 따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직후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인출직후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인출직후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인출직전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직전 기본적립금 - 인출금액(기본적립금 해당분)}}{\text{인출직전의 기본적립금}}$

▪ 인출직후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인출직전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직전 추가납입적립금 - 인출금액(추가납입적립금 해당분)}}{\text{인출직전의 추가납입적립금}}$

※ 인출 직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이전에 감액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 또는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기본적립금”이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추가납입적립금”이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말합니다.

제47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4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9조【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5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2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보험기간 중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혹은 보험기간 중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

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인터넷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5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5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55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5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1)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사망보험금(약관 제18조 제1호)

지 급 사 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 급 내 용	월납입 기본보험료의 600% +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 (기본보험료에는 추가로 납입된 추가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약관 제18조 제2호)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종신 연금형	보증 기간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차년도 또는 2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보증 금액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단,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1.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연금개시시점의 최저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저적립금을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4. 매 기본적립금 보증일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제4조(용어의 정의) 제9호에 의한 최저적립금을 보장합니다.
5.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4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6. 최저적립금은 제4조(용어의 정의) 제9호에서 정한 계약자적립금을 말합니다.
7. 연금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연금개시시점의 최저적립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최저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8.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9.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체증형의 경우, 체증기간 10년간의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률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체증기간 최종년도(10차년도)에 지급된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10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11.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의 연금연액을 일시금으로 선수령 할 수 있으며, 일시금은 그 당시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1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책임준비금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13.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종신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전까지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다른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4. 복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선택하신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별표2) 보험금 지급기준표(2)

■ 계약자는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연금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금(약관 제18조 제2호)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확정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 1.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연금개시시점의 최저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저적립금을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3. 매 기본적립금 보증일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제4조(용어의 정의) 제9호에 의한 최저적립금을 보장합니다.
4.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4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5. 최저적립금은 제4조(용어의 정의) 제9호에서 정한 계약자적립금을 말합니다.
6. 연금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그 계약자적립금(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연금개시시점의 최저적립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10년, 15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8.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책임준비금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9. 복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선택하신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별표3) 재 해 분 류 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안은 제6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43조 제4항 관련)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적 립 기 간</th><th>지 급 이 자</th></tr>
<tr><td colspan="2">사망보험금
(제18조 제1호)</td><td>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보험계약대출이율</td></tr>
<tr><td rowspan="4">연금
(제18조 제2호)</td><td>회사가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td><td>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td></tr>
<tr><td rowspan="2">회사가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td><td>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td></tr>
<tr><td>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td><td>-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td></tr>
<tr><td colspan="2">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1%</td></tr>
<tr><td rowspan="3">해지환급금
(제22조 제1항)</td><td colspan="2">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보험계약대출이율</td></tr>
<tr><td colspan="2">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td><td>-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td></tr>
<tr><td colspan="2">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td><td>예정이율 + 1%</td></tr>
<tr><td rowspan="2">해지환급금
(제22조 제2항)</td><td colspan="2">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 기간</td><td>보험계약대출이율</td></tr>
<tr><td colspan="2">“해지환급금 청구일 + 제2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td><td>예정이율 + 1%</td></tr>
<tr><td colspan="2">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보험계약대출이율</td></tr>
</table>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제24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약관의 내용에 따라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예정이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는 예정이율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공시이율을 말합니다.